

의안번호	2217714
의 퇴 인	이광희 의원
회 답 일	2026. 4. 21.
추계번호	26C1632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19조의3 (산업재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)	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신청하는 경우,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함 ※ 이 경우 신청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보고, 해당자가 휴업급여의 원인이 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때의 사용자를 사용자로 봄 ※ 산입되는 가입기간은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70%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봄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9조의3 (산업재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휴업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크레딧 제도가 신설되는 경우, 관련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개정안에 따른 휴업급여 수급자가 크레딧 지원을 받는 경우, 해당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고, 그에 상응하여 연금 수령액이 증가함

□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관련 크레딧 수급자의 수 및 증액될 수령액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함

- 고용노동부에 따르면, 2025년 기준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총 17만 4,233 명에게 1,978만 443일분이 지급되었고, 수급자의 1일당 평균임금은 12.5만원으로 집계됨

[표 1] 산재보험 휴업급여 지급 실적(2025년)

연간 총 급여 제공일수(일)	급여 제공인원 수(명)	수급자의 1일당 평균임금의 평균액(원)	연간 휴업급여 지급총액(백만원)
19,780,443	174,233	125,243	1,957,280

자료: 고용노동부

- 그러나 안 제19조의3제5항은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가입기간 추가산입 방식을 알 수 없으므로 대상자 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다만, 안 제19조의3제1항은 휴업급여 수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공단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이 때 당사자는 사업장가입자로, 관련 사업장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휴업급여 크레딧을 받는 사람과 해당 사업장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
 - 이 경우, 휴업급여를 수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휴업급여 크레딧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음
- 또한, 휴업급여 크레딧을 수급할 사람들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휴업급여 크레딧 도입에 따른 연금액 증액분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움
 - 국민연금의 급여는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평균 기준소득월액, 가입 시점의 명목소득대체율에 따라 결정되므로,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휴업급여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과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변화, 휴업급여 수급 시점의 명목소득대체율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는 관련 정보가 부재함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제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